사증신청 및 발급절차

2022년 9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chn.mofa.go.kr

1. 사증신청 서류의 작성·구비 요령

○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본인의 입국목적에 해당하는 초청자(한국측), 신청인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하되, **제출이 불가능한 구비서류의 경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사증신청서 작성, 초청장 등 사증 신청 시 지정양식은 당관 홈페이지 메뉴 중 **영사 > 사증 > 사증민원양식** 에서 다운받아 사용
- 사증발급신청서는 각 항목의 해당사항을 **모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본인이 서명 (허위내용 기재 시 사증불허의 사유)
- 사증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초청장**

- 초청장에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초청사유(목적), 초청기간, 국내 체류 기간 중 신원보증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공증은 불필요**)
- 초청장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 > 사증 > 사증민원 양식)에서 다운받아 작성

※ 단기일반(C-3-1), 단기상용(C-3-4), 단기취업(C-4), 동반(F-3) 사증 초청장은 정해진 서식은 없음

※ 거주(F-2), 결혼이민(F-6) 사증 초청장 양식은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 등 공적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에 한하여 유효

-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은 **상세증명서 제출(사증신청용)**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발급

○ **범죄경력증명**은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C-3-8, F-4, F-5, H-2) 이내 발급된 증명에 한하여 유효하며, 호구지 관내 공안 부서에서 발급받아 발급기관 소재지 省·市·자치구 공증처의 공증과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제출

- 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제3국에 거주한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장기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D-H계열(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 신청자**는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16.3.2.제정, '20.4.1. 개정 시행)

※ 목록 상 '결핵진단서 발급 지정 병원 명단' 참조

※ 결핵진단서 대체 가능 서류, 사증별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만 6세 미만 소아 및 임산부의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사증 종류는 '사증신청 시 입국목적별 구비서류' 참조

2. 사증신청 일반 절차

1 업무 관할지역

1) 사증신청은 원칙적으로 호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중국공관 관할지역 안내		
◦ 주중대사관	:	북경, 천진, 하북성, 산서성, 내몽고자치구, 신강위구르족자치구, 서장자치구, 청해성
◦ 선양총영사관	: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 상하이총영사관	:	상해,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 광저우총영사관	:	광동성, 광서장족자치구, 해남성, 복건성
◦ 칭다오총영사관	:	산동성
◦ 청뚜총영사관	:	중경,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 시안총영사관	:	섬서성, 감숙성, 녕하회족자치구
◦ 우한총영사관	:	하남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 다롄출장소	:	중산, 서강, 사하구, 감정자, 여순구, 금주구, 보란점구, 와방점시, 장하시, 장해현

2) 관할지역 예외

① 당관 관할지역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경우

※ 사회보험납부증명서, 개인소득세납부증명서, 거주증 등 제출(택1 가능)

② 유학(D-2-1 내지 D-2-6) 및 어학연수(C-3-1, D-4-1)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호구지 관할 공관뿐만 아니라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도 신청 가능

※ 일반관광(C-3-9)을 신청하는 학생도 재학증명서 등으로 실제 거주지를 입증하여 신청 가능

③ 상용사증 등 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한 사증은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단, 동일 회사의 각 지사 직원이 회의 등 동일 목적으로 단체(1일 100명 이내)로 비자를 신청하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지역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④ 대학 졸업자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F-4-14)은 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 법인기업체 대표·임원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F-4-16)은 회사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가능

⑤ 과거 당관에서 복수비자를 받아 정상 출입국 한 경우(단, 범죄경력증명 제출 대상자는 제외) 및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사증 접수 및 교부시간 (2017.8.21.부터 시행)

○ 사증접수 ⇨ 09:00 ~ 11:30

○ 사증교부 ⇨ 14:00 ~ 17:00

3 사증신청 방법 및 대리 신청의 범위

○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는 중국 외교부를 통하여 신청

○ 사증신청은 **당관 지정 대행사(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

- 단, 인도적 또는 위급한 사정, 외교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소명서(당관 홈페이지 메뉴 중 영사 > 사증 > 사증민원양식)와 증빙서류를 갖춰 개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사증(C33-1) 개인 접수 가능
- 결혼이민 사증(F-6)은 개인 접수(신청인 직접접수)만 가능

※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에는 대행사 접수 가능

※ 개인접수시 **사전 전화예약은 필수**[☏(010)8532-0404]이며, **접수일 이전에 미리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완비**함으로써, 접수 반려 또는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 당관 지정 대행사를 통한 신청은 대행사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사증신청 가능

- 당관 지정 사증 신청 대행사 리스트는 당관 홈페이지 메뉴 중 영사 > 사증 > 대사관 지정 대행사 참조

※ 대행수수료는 대행사의 총 대리건수, 이동거리, 교통비용, 타 공관의 이용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대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함

○ 대리인(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다음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가족, 회사 동료 등이 동일한 목적의 사증을 동시 신청할 경우 대표(1인) 신청 가능
- 신청인의 가족(2촌 이내)은 결혼증, 호구부,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
- 회사, 학교 등 일정조직 소속원은 위임장,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

4 급행사증

○ 신청대상 :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주재(D-7), 기업투자(D-8)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기타 급행사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요기간 : 3일 이내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면담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기간이 추가 될 수 있음

3. 사증심사 수수료 2022.06.01.부터 시행

(단위 : 인민폐)

사 증 유 형		수수료	급행 수수료	수수료 총계
단수사증	체류기간 90일 이내	280元	140元	420元
	체류기간 91일 이상	420元	140元	560元
더블사증	개별사증	490元	140元	630元
복수사증(장, 단기 포함)		630元	280元	910元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140元	-	-

※ 상기 기준은 중국인에 대한 사증심사 수수료이며, 기타 국가 국민은 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상호주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가 다름(A-1~A-3 및 D-8 자격 해당자는 심사수수료 면제)

※ 사증발급이 불허되거나, 복수사증을 신청하였으나 단수사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도 이미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사증발급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2022.06.01.부터 시행

사증 종류	심사기간 (접수일 포함)
- 가족사망, 병간호 등 인도적인 사유	당일
- 급행사증 (C3, C4, D7, D8, 사증발급인정서, 그 외 급행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3일 이내
- 관광사증(C-3-9)	4일 이내
- 청소년 수학여행단, 사증발급인정서,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가족방문 등 단기방문(C-3-1)/상용(C-3-4)/단기취업(C-4)	5일 이내
- 일시취재(C-1)/동포방문(C-3-8)/유학(D-2)/어학연수(D-4-1) - D/E계열/F-1~F4/방문취업(H-2) 등 기타 장기 사증	7일 이내
- 거주(F-2-3)/결혼이민(F-6)	10일 이내

※ 인도적 사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소명서'(당관 홈페이지 영사> 사증 > 사증민원양식)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상기 기준은 사증심사에 문제가 없는 일반기준**이며,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격리동의서 제출은 폐지 (22.6.1부터)

5. 사증 심사결과 조회 및 교부절차

○ 당관 홈페이지 **"사증신청 결과조회"**(→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로 자동연결)에서 영문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를 입력하면 사증발급 여부 및 심사 진행과정 확인 가능하며, 사증발급 거부 시에도 그 사유를 확인 가능함

○ 대행사를 통한 신청자는 대행사를 통해서 사증을 교부하며, 신청인 본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 사증 신청 당시 교부된 사증접수증을 소지해야 하고, **대리인이 여권(사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증 접수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소지해야 함**

※ 사증접수증 미소지 대리인은 여권수령 불가능

※ 신규 사증 발급시 기존 사증은 원칙적으로 취소됨

6. 기타 사증 신청 시 참고사항

1 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의 사증신청

○ 사증 불허처분을 받은 자가 재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 소명 사유가 없는 한 불허일로부터 2개월**(결혼이민, 영주자격배우자 초청은 불허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

○ 중국내 여타 공관에서 사증발급이 거부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허처분 공관에 재신청

2 사증의 효력

○ **사증종류** (Single/Double/Multiple)

- 단수(Sing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입국 가능
- 더블(Doub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회 입국 가능
- 복수(Multiple) : 사증 상 입국만료일(발급일로부터 1~10년) 까지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 사증을 발급받았더라도 국내 입국심사 시 입국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증을 발급한 공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사증의 **체류자격**은 국내 체류기간 중 활동범위를 나타내며,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특히, 취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사증의 **체류기간**은 유효기간 내 입국할 경우 최장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사증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함

3 사증심사의 기준

ㅇ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사증불허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불법체류 등)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정신장애자, 방랑자, 빈곤자, 기타 입국규제자 등

ㅇ 신청인이 ❶ 허위의 서류를 제출 ❷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❸ 명확한 입국목적 및 체류기간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에 대한 반대 소명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등은 상기 규정에 근거한 사증발급 거부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